

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(제10조 관련)

의료기관의 종류	선 임 기 준
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(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련 의과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) 영상의학과 전문의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영상의학과 전문의, 의사 또는 치과의사(치과병원만 해당한다)</li> <li>· 이공계(물리, 의공, 전기, 전자, 방사선)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</li> <li>· 방사선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</li> </ul>
치과의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치과의사</li> <li>· 방사선사</li> <li>·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(과노라마 및 세파로를 설치한 치과의원은 제외한다)</li> </ul>
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기관	의사,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